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9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황 희·강선우·안규백

한민수 · 이용선 · 어기구

박 정・차지호・부승찬

정성호・조 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인 학교복합시설로서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지역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확대하고,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복합 소규모 학교의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에 주거 관련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법률 제 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2
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	
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
	<u> 주택</u>
<u>라.</u> (생 략)	<u>마.</u> (현행 라목과 같음)